
주요 국가의 외국인 대상 자국어 교육을 위한 교사 자격 제도 운영에 관하여

최정순 · 배재대학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과 교수

1. 들어가기

현재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는 시행 의도나 목적의 필요성, 시의성 등에 있어서는 관련자들이나 기관 등의 충분한 공감은 끌어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격증의 남발, 시험제와 학위제의 공존, 시험 문제에 관한 여러 지적 등으로 개선이나 변화의 요청을 받고 있다.

한 국가의 언어를 자국 내 또는 국외에서 외국인(물론 국외 동포 등을 포함해서)을 대상으로 가르치는 일은 단순히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언어만을 가르치는 일은 아닐 것이다. 그 언어 안에는 문화도 있고, 자국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이 포함될 수밖에 없으며, 학습자들 또는 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언어를 통해, 그리고 그 언어를 가르치는 사람인 교사를 통해 그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에 대해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언어를 가르치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 가르치는 일을 담당하는 교사는 언어인 한국어를 매개로 외국, 외국인과 직접적으로 부딪히고 교류하고, 한국을 소개하고 홍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언어 교사의 역할은 단순히 '언어에 대한 것', '언어'만을 가르치는 것

이 아니다. 교사가 담당하는 것은 무엇보다 ‘교육’이 되어야 하며, ‘교육’은 내용적 지식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언어의 경우, 자칫 경시되어 말하는 방법을 가르치면 되는 것으로, 그래서 언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는 교사를 마치 ‘기능인/기술자’처럼 인식하곤 하는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말/언어’ 외에 그것에 포함된, 그리고 반드시 따라가는 많은 것들이 동시에 교육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 국가의 자국어를 외국인을 대상으로 가르치는 사람의 자격은 매우 중요하다. 물론 영어 등의 서구어의 경우는 우리 한국어와 다를 수 있다. 이들 언어는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의 요구나 동기가 한국어의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격 자체에 대해 국가 등이 나서지 않아도 된다. 국내의 영어 교육 상황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결국은 외국인 대상 자국어 교사의 자격 부여 문제는 국가가 담당을 하든지, 아니면 시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놓아두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담당하고 있고, ‘국어기본법’의 틀에 따라 일정을 갖추면 ‘교사’가 아닌 ‘교원’의 자격을 1~3급으로 구분하여 부여하고 있다.¹⁾ 3급 자격의 취득은 학위에 의하거나 학력에 관계없이 120여 시간의 수업 수강 후 시험에 합격하면 취득할 수 있다. 이들이 일정 기간 한국어 교육 경력을 쌓으면 2급이 되고 1급이 된다.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전공을 하면 2급 자격을 바로 취득한다. 현재 이러한 방식으로 한국어 교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수는 2011년 8월 현재 6,190명이다.

그런데 국내든 국외든 한국어 교육 기관의 경우 반드시 이런 규정과 절차에 따른 자격증 취득자만이 교사가 될 수 있다는 규정이나 원칙이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각 기관의 강사 선발에서 자격증 소지 여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그럼에도 매년 많은 수의 자격증 취득자가 4년제

1) 새삼스러울 것도 없이 ‘국어기본법’에 의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한 공식적인 명칭은 ‘교사’가 아닌 ‘교원’이다.

학부, 2년제 대학원 과정, 120시간 단기 과정(주로 3개월 정도) 이수 후 시험을 치르는 방식, 근래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점 인정제를 통한 학위 취득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양산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다른 나라들은 자국어 교사들의 자국 내외에서의 교육을 위한 과정이나 절차·규정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그 내용이 어떤지, 없다면 어떻게 관리하는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을 쓰기 위해 일차적으로는 인터넷 등을 통해 대략을 확인하고, 기존의 문헌들을 조사했으며, 이차적으로는 미리 준비한 질문지²⁾를 활용하여 조사 대상 국가들의 국내 설립 기관들(괴테 인스티튜트나 알리앙스 프랑세즈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관련 전문가들과의 면담 등을 통해 보완하는 과정을 거쳤다.

2. 각 국가들의 사례³⁾

2.1. 일본

일본의 경우는 자국어 교사의 자격에 대해 우리나라와 달리 국가가 인정하거나 국가가 부여하는 제도는 없지만 재단 법인 일본어교육진흥협회⁴⁾라는 곳에서 인정하는 자격 제도는 있다. ‘급수’ 제도는 없으며, 일본어 교육 기관에 관한 기준(1988년 문부성)에 의하면 아래의 네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일본어 교육 자격을 인정받는다.

2) 설문지 내용은 본고 제1절 마지막에 제시하였다.

3) 각국의 사례들을 앞에서 언급한 질문지의 순서와 내용에 따라 동일한 방식으로 기술해야 비교가 쉽고 의미 있겠으나 정보 확보가 어렵고 각국의 상황이 서로 상이하여 별개의 방식으로 기술하게 되었음을 미리 밝힌다.

4) <http://www.nisshinkyo.org> 참조. 국가 기관은 아니지만 국내외 상관없이 일본어 교육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임.

- (1) 대학교(2년제 제외)에서 일본어 교육에 관한 주전공(일본어 교육 과목 45학점)을 수료하고 졸업한 사람
- (2) 대학교(2년제 제외)에서 일본어 교육 과목 45학점을 수료하고 졸업한 사람
- (3) 일본어교육능력검정에 합격한 사람
- (4) 일본어 교육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 능력이 있는 사람
(예를 들어, 일본어 교사 양성 과정 420시간 이수자, 단기 대학이나 전문 학교에서 2년 이상 일본어에 관한 연구·교육에 종사한 사람, 고등학교 교원 등)

재단 법인 일본어교육진흥회⁵⁾는 위 (1)~(4)에 포함되는 사람들을 교사로서 인정하고, 위의 자격을 갖춘 교사의 채용을 각 교육 기관에 추천하고 있다. 즉, 일본 내에서는 외국에서 일본 정부나 정부 관련 기관 등에서 일어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특별한 자격증이 요구되지 않으며, 위 (1)~(4)에 해당하면 충분하다.⁵⁾

위의 네 부류 중 (4)의 경우 중 양성 과정을 마친 사람에 대한 자격 부여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단기 양성 과정과 관련하여 좀 더 부연할 필요가 있다. 우선 우리나라에서는 단기 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국가가 시행하는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해야 3급 자격을 부여하지만, 일본어 교육의 경우 시험 없이 학위제와 동일하게 전문가 자격을 부여한다는 점이 우리나라와 다르다. 일본어의 경우는 단기 과정에서 수강해야 하는 수업 시수가 420시간(이론 과목 180시간, 실기 과목 180시간, 실습 60시간)인 반면 우리는 120시간밖에 되지 않아 우리보다 훨씬 기간도 길고, 공부하는 시간도 많다.

한국어 교육의 경우 단기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한해 응시 자격이 부여되는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이 정부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합격한

5) 국외에 있는 기관 중 국제교류기금 국가별 센터의 경우, 일본어 교육 전공자 석사 이상이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경우 3급 자격을 부여하는 반면, 일본어 교육의 경우에는 ‘일본어교육능력검정시험(Japanese Language Teaching Competency Test)’⁶⁾이 있으며, 시험의 주관은 재단 법인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⁷⁾에서 담당하고 일본어교육학회가 인정하고 있다. 민간 차원이며,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단기 과정이 없으며 시험을 볼 사람은 일본 문화청에서 제시한 5개 영역의 교육 과정을 토대로 시험을 준비하고 시험에 합격하면 위에 제시된 다른 항목(1), (2), (4)에 해당하는 사람들과 동일한 자격을 갖는다.⁸⁾

이 시험은 (1), (2)와 (4)에 해당하는 사람도 볼 수는 있지만 안 봐도 유자격자로 인정을 받는다. 응시 자격은 특별히 없으며, 교사를 채용할 때 이 시험의 합격증은 참고 자료는 되지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채용 조건은 각 교육 기관마다 다르다. 결국 시험 합격증의 가치는 각 교육 기관이 판단하게 되므로 우리와는 자격증의 가치나 역할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일본어 교육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국가가 주도하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외에서의 일본어 교육을 주도하는 재단 법인 형태의 두 기관인 ‘재단 법인 일본어교육진흥협회’와 ‘재단 법인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가 자격 획득의 기준을 제시하고 활용을 유도하고 있다.

6) <http://www.jees.or.jp/jltct> 참조.

7) <http://www.jees.or.jp/index.htm> 참조.

8) 일본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영역은 본고 뒤에 첨부하였다. 이는 2000년 일본 문화청이 제시한 ‘일본어 교원 양성에 필요한 교육 내용’인데 이후 약간 교육 내용을 수정했다고 한다. 아래의 주소로 검색할 수 있다.

<http://cache.yahoofs.jp/search/cache?c=cSMzBjrGmucJ&p=%E6%97%A5%E6%9C%AC%E8%AA%9E%E6%95%99%E5%B8%AB%E9%A4%8A%E6%88%90%E3%81%AE%E3%81%9F%E3%82%81%E3%81%AE%E6%A8%99%E6%BA%96%E7%9A%84%E3%81%AA%E6%95%99%E8%82%B2%E5%86%85%E5%AE%B9&u>

2.2. 중국의 경우

우선 중국에는 ‘외국어로서의 중국어 교사 자격 인증’ 제도가 없으며⁹⁾ 대외 중국어 교육 전공자라도 교사 자격시험을 통해 교사 자격증을 받아야 중국 교육 기관에서 교사로 있을 수 있다. 이것은 학위제와 시험제가 공존하는 한국의 한국어 교사 자격 제도와 다르다.

중국의 경우는 근래 ‘공자아카데미’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 활발하게 중국어 보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세종학당 사업과 유사한 부분이 많아 상세한 검토와 비교가 의미 있을 수 있다.

공자아카데미를 총괄하는 ‘국가 한반’은 중국 교육부 직속 산하 기관으로서 세계 각국에 중국 언어문화 교학 자원을 제공하고 봉사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국가 한반’에서는 중국어의 국제 추진 사업 방침과 발전 전략을 세우고 각 나라 교육 기관의 중국어 교육을 지지하며 국제 중국어 교학 표준을 제정하며 중국어 교재를 개발하고 추진한다.

2008년에 중국 ‘국가 한반’에서는 ‘국제 중국어 교사 자격 표준’을 규정하여 국제 중국어 교사의 양성과 연수, 능력 평가, 자격 인증을 위한 근거로 두고 있다.¹⁰⁾ ‘표준’은 언어 지식과 기능(중국어 지식과 기능, 외국어 지식과 기능), 문화와 교류(중국 문화와 중외 문화 비교, 이문화 교류), 제2 언어 습득 이론과 학습 전략, 교수법(중국어 교수법, 시험과 평가, 커리큘럼, 대강, 교재와 보조 교구, 현대 교육 기술과 응용), 종합 소질(교사의 직업 소질, 자기 개발 능력과 직업 도덕) 다섯 개로 구성하였다. ‘표준’은 TESOL 등 국제 제2 언어 교육과 교사 연구 최신 성과를 바탕으로 국제 중국어 교사들의 현장 경험을 흡수하여 국제 중국어 교육의 특성을 반영하였다.

중국 교육부와 국가 한반에서는 국외와의 교육 교류 협의와 국외 중

9) ‘국가 한반’에서 주관하던 ‘대외중국어교사자격시험’은 2005년에 폐지되었다.

10) http://www.hanban.edu.cn/teachers/node_9732.htm 참조. shizi@hanban.org

국어 교육 수요에 따라, 국외 교육부, 대학, 중학교와 초등학교 등 교육 기관에 중국어 교사를 공식 파견하는데 국가 한반에서 실제적인 업무를 맡고 있다.

‘국가 공식 파견 교사’가 갖추어야 할 자격으로는 50~55세 이하의 중국 공민으로서 ‘국가 한반’과 협력 관계를 맺은 중국 대학교, 중·고등학교, 초등학교에서 대외 중국어, 국어, 외국어 교육 등의 분야에 재직 중인 교사로서 2년 이상의 교학 경험이 있어야 하며 중문학과 혹은 대외 중국어 교육학과 대학교 이상의 학력(학위증, 졸업증 필수)을 갖추어야 한다. 그 외 해당 국가의 언어 혹은 영어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능력, 보통화능력시험 2급 갑 이상의 자격증 등을 갖추어야 하며 국외에서 외국어로서의 중국어 교학 경험이 있으면 우선 선발된다. 중문학과 혹은 대외 중국어 교육학과의 대학 이상의 학력이 있지만 교학 경험이 없을 경우 자원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¹¹⁾

중국 공자아카데미 본부는¹²⁾ 중국에서 협력 관계에 있는 대학들 중 중문학과와 대외 중국어 교육학과의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을 갖춘 강사 및 그 이상의 직함을 가진 재직 교사를 선발하여 국외에 파견하는데 언어 영역의 교사는 반드시 보통화능력시험 2급 갑 및 그 이상의 등급을 받아야 한다.

중국의 국가 한반이나 공자아카데미 본부는 개인적인 교사 신청을 접수하지 않으며, 국외 공자아카데미에서 개인적으로 신청한 중국어 교

11) 보다 상세한 정보는 http://www.hanban.edu.cn/teachers/node_9753.htm 참조.

12) 공자아카데미 교사 취임 자격: 대학교 및 그 이상의 학력 소지자, 강사 및 그 이상의 직함, 자원봉사 지원 교사는 국가 한반에서 정한 지원자 취임 자격 구비, 언어 교사는 보통화능력시험 2급 갑 및 그에 해당하는 능력증 소지, 해당 국가의 언어 지식과 기능 구비, 외국어로서의 중국어 교학, 커리큘럼 설계, 교학 평가, 교사 양성 등 능력과 경험 구비, 현대 정보 기술을 교학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중국 문화 기본 지식과 당대 중국 개황을 알고 문화 활동 조직 능력 구비 등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상세한 정보는 http://www.hanban.edu.cn/confuciusinstitutes/node_7535.htm#no2 참조.

사는 국가 파견 교사가 아니다.

그 외에 우리나라의 민간 자격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자격증이 있는데 하나는 국제한어교사협회(國際漢語教師協會, International Chinese Language Teachers' Association, ICLTA)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인 '국제한어교사자격증(國際漢語教師資格證)'이다. 이 협회는 중국어 보급과 국제 교류 합작을 목적으로 국제 중국어 교사의 양성, 평가, 자격 인증, 국외 파견을 전문적으로 실행하는 권위 있는 기구이다. 이 자격증은 ICLTA와 관련 있는 국가들의 연구 기관과 공동으로 개발하였으며, 중국,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인도, 벨기에, 일본, 싱가포르, 한국 등 110여 개 국가에서 공동으로 인정하는 자격증이며, 유네스코, 세계 각국의 정부 기구와 교육 기구, 그리고 중국 국가 인사부, 교육부, 노동부 등 정부 부문의 인증을 거쳐 발급되는 권위를 인정받는 자격증이라고 한다.¹³⁾

다른 또 하나의 자격증은 'IPA 자격증'인데, 이는 국제인증협회(International Profession Certification Association, IPA)가 미국 국무부, 주미 중국 대사관, 중국 인력 자원과 사회 보장부가 연합하여 인정하는 '한어교사취업증서(공식 명칭은 國際注冊漢語教師資格證)'이며, 국제적으로 통일된 국제 직업 자격 인증서이다. 이 자격증은 100여 개 나라와 미국 연방 정부의 인정, 미국 국무장관의 서명을 받았고, 중국 인사부의 허가를 받아 전국에 시험 대행 기관을 두고 있다.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주미 중국 대사관, 미국 국무부, 중국 인사부의 전국 인재유동센터, 국제인증협회, 중국 국가인재사이트의 연합 인증과 이에 상응하는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13) 시험은 매년 3~5회 정도 있으며, 응시생 수에 따라 수시로 시행되기도 한다. 필기시험(40%)과 면접시험(60%)으로 나뉘며, 초급(60~75점)·중급(76~87점)·고급(88점~)으로 구분된다. 중국 내 10여 개 대학에서 실시된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http://www.ctcfl.org/banfa.aspx> 참조.

2.3. 독일의 경우

독일의 경우는 주요 외교 문화 정책 중의 하나로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장려 정책을 특징으로 들 수 있는데, 외국어로서의 독일어의 장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독일 문화와 독일 현실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해 주는 수단으로 그 중요성을 지닌다. 따라서 독일 외무부는 이들 정책을 수행하는 외부 기관들-독일문화원(GI, das Goethe-Institut), DAAD (der Deutscher Akademischer Austausch Dienst) 등-과 긴밀히 공조하여 예산 등을 지원한다. 대표적인 독일어 교육 기관인 'GI'의 경우 1951년에 설립된 공익을 위한 등록 법인으로 2010년 현재 전 세계에 149개의 지역 문화원을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그 지역에서 문화 프로그램 및 어학 강좌 개설, 현지 독일어 교사, 대학, 교육 기관을 지원하며 독일에 대한 최신의 정보를 제공한다.

1990년대 초반까지는 독일 뮌헨에 있는 GI 본부에서 자국인 혹은 외국인 독일어 교사를 양성, 배출했는데 20여 년 남짓 중단되었다가 근래 재개했다.

90년대 초까지 진행되었던 교사 양성 및 연수 프로그램은 전공과 관계없이, 외국인의 경우 일정 수준의 독일어 능력을 갖춘 사람을 선발하여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반 정도의 기간 동안 독일 현지에서 언어 교육 외에도 독일 내 주요 도시를 방문하면서 다양한 주제를 조사 발표하는 등의 방식으로 상세하게 최신의 도시 관련 정보를 취득하는 등의 집중적이면서도 효율적인 교사 교육을 수행했다.

독일어 교육을 위한 교사 자격증은 있는데 국가 단위의 자격증이 아니라 GI에서 부여한다.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DaF(Deutsch als Fremdsprache, 외국어로서의 독일어)'를 전공할 수 있는데, 졸업을 해도 자격증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들 전공자들은 자국 내 대학이나 외국에서의 독일어 교육을 할 수는 있다. 시험 등을 통해서 자격증을 받는 제도

등은 없고, 지난 20여 년간은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으며, 근래 다시 시작한 각 지역 GI에서 실시되는 연수 과정을 통해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났다.

정리하면 독일어의 경우, 예전에는 독일 외무부 지원을 받는 독일 문화원에서 자국민이든, 외국인이든 선발하여 일정 기간 집중적인 교육을 시킨 후 자격증을 발급했으나, DaF의 등장 및 발전, 교사 적체 등의 이유로 20여 년 남짓 중단되었다가 근래 재개했다. 국가 단위의 자격증은 없으며, 단기간 양성 과정을 통한 시험제에 의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독일 문화원의 경우는 자격증 소지자의 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의 기관에서는 채용 등에 있어서 자격증 소지의 제한이 없다.

2.4. 프랑스의 경우

프랑스의 경우, 국가가 보증하는 외국어로서의 프랑스어 혹은 제2 언어로서의 프랑스어 교사 자격 제도가 있다. 우리나라처럼 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하는 방식은 없지만, 대학의 학부나 대학원 과정에서 전공을 하거나 그에 준하는 과정을 이수하는 방식으로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대학 FLE/FLS의 교사 자격증 시험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프랑스나 외국 교육 기관이 FLE 교사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원하는 교사의 능력에 따라 기준을 제시하면 된다.

각각의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외국어로서의 프랑스어 전공(FLE: Français langue étrangère, French as a foreign language)'을 전담하는 학과는 없다. 그러나 고전/현대 문학, 외국어 및 문화, 언어학 전공(혹은 유사 이름으로 된 전공)자가 12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여 FLE 전공 학사 학위를 취득한다. 8개 대학에 개설되어 있다. 이 점은 우리나라의 교직 과정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학위증에도 '외국어로서 프랑스어 전공(FLE)'이라고 명기된다.

이 학위는 FLE 석사 학위 과정에 진입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외국어로서의 프랑스어 전공(FLE)’으로 석사 학위 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도 있는데, 이 자격의 명칭은 유럽 통합에 따라 ‘Master1’이라 불린다. 이 자격은 고전/현대 문학, 외국어, 언어학 전공 중 하나이거나 과거의 FLE 전공으로 학사 학위를 가진 사람만 등록하여 취득할 수 있고, 이 과정은 반드시 교육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으로 진출할 수도 있다. 현재 9개 대학에 개설되어 있다.

박사 학위 과정에서도 FLE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데, 취득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Master2’라 불리는 자격인데, 교육 과정이 실습 위주로 구성되어 직접 교사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과정으로서 원칙적으로 교단에 설 수 있는 준비가 완전히 끝난 단계, 즉 교육 전문가(professional) 자격이다. 다른 하나는 연구 과정으로 FLE 교육학을 이론적으로 연구하는 단계로, 논문을 완성하고 나서 박사 학위를 받는다.

그리고 위와 같이 학위에 의한 자격 취득 외에 ‘외국어로서의 프랑스어 교원 자격증(CAPEFLE)’은 프랑스인이거나 외국인이라도 다른 전공으로 현직에 있는 교사들, 혹은 외국어로서의 프랑스어 전공 학사 학위 과정에 진입하는 데에 자격이 미달되는 경우에도 추가로 이러한 과정을 이수하고 학사 학위 과정에 진입할 수 있다. 전국에서 1개 대학에 개설되어 있다.

이렇듯 외국어로서의 프랑스어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 취득에 관한 전반적인 절차가 이전보다 전체적으로 까다로워진 것으로 보인다.

그 외 통신으로 이수하여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도 있어 프랑스인은 물론 외국인이라도 학위를 받을 수 있다. ‘국립통신교육원(Centre National d’Enseignement à Distance)’이 주관하고 ‘알리앙스’, ‘Stendhal-GrenobleIII 대학’, ‘국제교육연구원(Centre international d’études pédagogiques)’ 등과 연계하여 원격 교육을 실시하여 등록자가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학점을 취득하고 시험에 통과한 경우 학위를 부여한다.

그 외에 국립교육연구원, 파리 알리앙스 본부, 상공회의소, 대학 등에 단기 FLE 연수가 개설되어 있는데, 이것은 교육 자격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고 교육 방법의 향상을 위한 것이다.

대표적인 국외 프랑스어 교육 기관 중의 하나인 '알리앙스 프랑세즈 (Les Alliances françaises)'의 경우 현재는 대다수가 FLE 전공자들이며, 특히 교육 과정을 전담하는 인력들은 대개 프랑스에서 파견되는데 보통 대학 교수 자격 고사를 통과하고 경험 역시 많은 분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물론 현장에서 직접 언어를 가르치는 교사의 경우는 이러한 자격 없이도 현지에서 경험을 가진 프랑스인이거나 프랑스에서 학위를 취득한 현지인들을 고용하기도 한다. 원칙적으로는 자격증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지만 현지 상황에 따라 꼭 제한적이지는 않다.

이렇듯 프랑스어의 경우 다른 국가와 달리 한국처럼 국가 차원의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으나, 학위제에 의한 방식만 있고, 단기 과정 등을 통해 시험에 의한 자격증 부여 방식은 없다. 국내에서든 국외에서든 외국어로서의 프랑스어 교육을 위한 자격의 관리는 점점 엄격해지고 있으나, 그럼에도 여타의 국가들처럼 세계 각 지역의 프랑스어 교육 기관에서는 교사의 채용 등에 있어서 자격증 소지를 필수적으로 요구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어 교육의 수요는 전 세계적으로 펼쳐져 있을 뿐 아니라 대학 교수로부터 사설 학원 강사까지 다양한 기관들에서 창출된다. FLE 교육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프랑스 및 외국 기관들은 자신들이 제공할 수 있는 급여 외 기타 복지 수준을 제시하고 학사 학위 이상 원하는 능력을 요구한다. 현재 한국 대학에서는 최소한 FLE 석사 학위 이상의 자격자를 요구하고 있다.

2.5. 영국의 경우

영국의 경우는 외국어로서의 영어 교사가 되는 방법은 학위제에 의

한 것보다는 직업 교육 차원에서 다양한 자격증이 존재한다. 영국에서 가장 널리 인정받는 자격증은 'RSA/UCLES'의 CELTA와 'Trinity College London'¹⁴⁾의 TESOL 수료증, 그리고 정부가 발급하는 'Qualified Teacher Status(QTS)'가 있는데 이 QTS는 현재 거의 통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 자격증은 우리나라의 '한국어 교원 자격증'이 중·고등학교에서 인정되지 않는 것처럼 영국 내의 정규 교육 기관이 아닌 국외 또는 영국 내 외국어 교육 기관에서만 허용되는 최소한의 조건일 뿐이다.

정부 차원의 인증 과정이 없기 때문에 'BATQI(The British Association of TESOL Qualifying Institute)'라는 비영리 법인에서 이들 다양한 자격증들을 하나로 묶어 독립적인 자격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영국에서 '외국어로서의 영어(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EFL)' 교사가 되는 방법은 다양한데 일반 자격증 과정을 이수하고 나서 상위의 직업 교육을 받는 방법과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별도의 과정을 통해 EFL을 전공하는 방법이 있다.¹⁵⁾ 자격증 과정은 영국 특유의 'Certificate'와 'Diploma' 과정 두 가지가 있는데, 영국 대부분의 전문 직업 교육 과정은 이 두 단계를 따르고 있다. 우선 일반 자격증 과정의 자격 취득에 대한 대략적인 절차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우선 EFL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기초 과정을 이수해야 하는데, 이 과정은 말 그대로 EFL 자격증과는 무관하게 직업 소개 교육 차원에서 기초적인 내용만을 다루면서 대략 1주일 정도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자격증 과정(Certificate Courses)을 수강하게 되는데 이 과정은 'TEFL(Teaching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에 대한 경

14) 이 기관의 경우 명칭에는 'college'라는 표현이 있어서 런던대학의 하나처럼 보일 수 있지만 대학이 아닌 기업으로 보인다. 대표 홈페이지 주소를 보면 <http://www.trinitycollege.co.uk>로 되어 있고, 소개 글에서도 'Trinity College London is a leading international examinations board'라고 되어 있다.

15) 영국에는 EFL을 전공할 수 있는 학위 과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설명한 대로 대학 재학 중이나 졸업 후 4~6주 정도의 교육을 받으면 영어 교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다.

력은 전혀 없지만 학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과정을 이수함으로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이 자격증은 영국 내 또는 국외의 교육 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BATQI'도 이를 위한 별도의 과정을 개설하고 있으며, 외부 자격 인증 기관 중 대표적인 두 기관인 'RSA/UNCLES'와 'Trinity College London' 역시 각각 'CELTA(Certificate in English Language Teaching to Adults)'와 'CertTESOL(Certificate in Teaching English to Speakers of Other Languages)'이라는 자격증을 발급한다. 특히 'Trinity College London Certificate in Teaching English to Speakers of Other Languages'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영국 내외에 100여 개 정도 개설된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원격으로도 수강이 가능하다.¹⁶⁾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약 130여 시간의 교육 과정을 수료해야 하고, 실제 강의 능력을 인정받아야 한다.

Certificate를 소유하고 적어도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상위 단계인 Diploma 과정이 있다.¹⁷⁾ 'RSA/UNCLES Diploma (DTEFLA)' 과정은 대학과 대학원의 중간 단계의 자격증으로 정식 학위로는 인정되지 않지만 전문 자격증으로 통용된다. 정규 학위 과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 입학 자격에는 조금의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석사 학위 과정에 입학을 하려면 이 Diploma 과정을 이수하는 것이 보통이다. 'Trinity College London'의 'Licentiate Diploma to TESOL'은 'CertTESOL' 또는 동등한 자격을 지니고 2년 이상의 실무

16) 근래 원격으로 수강할 수 있는 과정이 많이 생기고 있으나 많은 경우 인증 기관의 인증을 받지 못하고 해당 교육 기관 자체의 자격증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 이유로는 초급 단계의 자격증은 교실 운영 능력, 교수 방법 등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므로 원격 교육으로는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BATQI의 경우도 초급 단계는 원격 교육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7) Diploma는 석사 과정이나 학위 취득 등과는 별개다. 현재 한국 대학에서 개설하고 운영하고 있는 한국어 교사 양성 교육 과정 등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경력이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과정이다.

그 외 외국인 영어 교사를 위한 자격증 제도로는 'Certificate for Overseas Teacher of English(COTE)'와 'Diploma for Overseas Teacher of English(DOTE)'가 있다. COTE는 RSA/UNCLES가 CELTA와 유사한 교육 과정을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고 교육 경력이 300시간 이상인 18세 이상의 예비 교사를 대상으로 한다. 영어 능력은 원어민 수준이어야 하고 국외에서만 개설되며 교육 과정은 보통 150시간 정도이다. DOTE는 500시간 이상의 교육 경험을 가진 21세 이상의 TEFL 교사를 대상으로 한다. 입학 자격은 'CFC(Cambridge First Certificate)'를 통과할 정도의 영어 실력을 갖추어야 하며, 교육 과정은 보통 2년 정도이다.

영국의 EFL 교사 교육은 직업 교육의 의미가 강하다. 물론 학위가 중요시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기초 자격증, CELTA, DELTA 등의 자격증을 따야 하며, 대부분이 학사 학위를 가진 후부터 이러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 즉 기본 자격증(Certificate)-전문 자격증(Diploma) 정도의 직업 교육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BATQI는 사설 기관이지만 정부가 하는 일을 대신하여 인증의 질을 고양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 기관 외에도 많은 교육 기관들이 자격증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영국의 교사 교육 및 인증 절차는 기관 인증제를 토대로 질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교육 과정이 매우 실제적이라는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특히 Diploma 단계는 영국 특유의 교육 제도인데 교사 보수 교육(재연수 등) 측면에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럼에도 영국의 교사 자격 제도는 정부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즉 세계 각국의 영국 문화원의 강사 채용 기준은 이들 각 자격증과 Diploma를 인정하지만 정부 차원의 인정은 아니다.

2.6. 미국의 경우

미국의 경우는 주마다 교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이나 자격이 다르고, 가르칠 수 있는 과목 역시 하나만이 아니다. 일정한 과목을 이수하거나 해당 주에서 요구하는 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을 가질 수 있다. 보통은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져야 하고, 재학 중 2년 혹은 3년간 교직을 이수해야 하고, 주에서 요구하는 시험에 합격을 하거나 다른 요구 조건을 충족하면 'Preliminary' 자격증 혹은 3년짜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이후 10년마다, 혹은 주에서 정한 기간마다 포트폴리오(portfolio) 등을 제출하거나 'national board certificate'를 취득하면서 교사 자격을 갱신해 나간다.

미국 내 초·중·고등학교에서 영어를 ESL로 가르치고자 할 경우 대부분 정교사 자격증을 갖추어야 하지만 이 또한 주마다 상황이 다르다. 영어 교육의 경우는 앞에서 설명한 과정과 유사하게 교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데, 외국인 대상의 영어 교육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학(원)에서 TESOL을 이수하거나, 단기 과정으로서의 TESOL 프로그램(1개월에서 12개월까지 기간이 다양함.)을 이수하고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학이나 기관이 발급하는 이수증(certificate)으로 자격을 갖춘다. TESOL은 대부분이 대학원 과정으로 개설되며, 학부에서는 부전공으로 할 수 있으며, 학위 과정은 이론과 연구 중심으로, 대학 부설의 자격증 과정이나 사설 교육 기관의 경우는 실습을 교육 과정에 포함시켜 실질적인 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대학의 TESOL 학위 과정을 살펴보면, 대학원의 경우 교육 과정은 11~12개 과목, 33~36학점 정도를 이수해야 하며, 입학 자격은 학부 성적이 3.0 이상이거나 제2 언어 배경이 있는 사람, TESOL certificate가 있는 사람이 우대되며, 외국인의 경우 TOEFL 600점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

비학위 과정은 최소 3~4주에서 최대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마치면 수료증을 제공한다. 근래 온라인(on-line) 교육 과정도 활성화되고 있다.¹⁸⁾

국외에서의 영어 교육을 위한 특별한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정부 기구나 단체는 없으며, 시험 제도도 없다.

3. 결론

이상과 같이 주요 몇 국가들의 외국인 대상 자국어 교육을 위한 자격증 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공통적인 특성을 간단히 정리하고 이들 국가의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한국어 교원 관리 제도에 대한 제언을 하는 것으로 결론을 삼고자 한다.

우선 제일 특징적인 것은 본고에서 대상으로 했던 국가들의 경우 어느 국가도 법에 의해 직접적으로 교원의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¹⁹⁾ 대다수의 국가들은 교원 자격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 정도만을 제시할 뿐이고, 각 해당 국가의 상황에 따라 다양성이나 개방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모든 국가들이 자격의 최소 조건을 4년제 대학 졸업으로 삼고 있으며, 전공자 및 관련 전공자들이 교육과 관련된 교육 과정이나 지정 과목들, 특히 수업 실습이나 참관 등의 과목을 이수하면 자격을 취득할

18) UCLA Extension ONLINE TEFL Certificate Program의 경우 6과목, 16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외국인도 수강이 가능하다. The New School University의 경우는 7, 9, 12주 프로그램이 있으며, 9과목 17학점을 이수하면 된다. 출결에 관한 관리가 매우 엄격하여, 최대 2회까지만 허용되며, 최소 1주 4회 이상 접속하여 수강해야 한다(최정순 외, 2000: 47~48)에서 요약 정리한 것임.).

19) 물론 담당 기관이 어느 정도 국가 예산에 의존하고는 있겠지만 자격 제도 운영 등에 대해서는 독립적이며 거의 민간 수준이라 볼 수 있다.

수 있다는 점 역시 공통점이었다.

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학위제가 아닌 별도의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제도가 일본, 영국, 미국 등에서 보이는데 일본의 경우 교육 시간이 최소 420시간이고 근래 500시간 또는 600시간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전문성을 갖춘 교사 양성을 위해서는 기존의 420시간으로는 부족하다는 자성에서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점은 우리나라의 단기 과정 교육 시간이 120시간이라는 점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다른 나라의 이러한 특성들을 확인하면서 현재의 우리나라 ‘한국어 교원 자격증’ 제도에 대해 한두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제도는 국가별 취지나 상황에 따라 당연히 다를 수 있고, 그런 점이 장점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현행의 제도가 보다 큰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의 양산보다는 원래부터 이 제도가 추구했던 한국어 교원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고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에 좀 더 천착할 것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전공을 하거나 혹은 전공을 안 한 사람의 경우 최소 학사 학위 이상을 지닌 사람이 현재의 120시간이 아닌 400여 시간 이상의 집중적인 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시험 없이 동일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될 때 현행의 학위제와 시험제의 공존에 따른 난점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여기에 뒤따라야 할 것은 교육 과정의 검토와 각 과목별 내용학에 대한 연구 및 기준 제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현행의 이수 학점 수나 과목명의 재정비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예시된 과목에서 무엇을 얼마나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학부와 대학원이 동일 과목으로만 예시되어 있는데, 과목명은 같을 수 있겠지만 학부 수준에서 4년간 45학점을 이수하면서 학습해야 할 교수 학습의 내용은 대학에서 다양한 전공을 한 후 대학원에 진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수 학습의 내용과는 분명 양과 수준에서 달라야 할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재검토와 보완이 다른

국가들의 자격 제도와 차별화되고, 객관적인 한국어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우선적 과제가 될 것이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전문성이 확인된 우수 인력이 양성·배출된다면 이들 전문가를 통한 한국어 교육의 발전과 국외에서의 한국어 및 한국 문화 소개와 확장은 훨씬 수월하고 안정적인 궤도에 오를 것이다.

참고 문헌

- 송기중(1993), 미국과 영국의 언어 정책, 《세계의 언어 정책》(국어학회 편), 태학사.
- 이규환(2010), 《주요국의 교육 제도》, 배영사.
- 최정순 외(2000), 《주요 국제어의 자국어 교사 교육 프로그램 실태 조사》, 한국어세계화추진위원회 · 문화관광부.
- 日本語教育學會(2005), 《新版 -日本語教育事典》, 大修館書店, 946~949.

각국 관련 자료 출처

- http://www.education-potal.com/how_to_become_an_esl_teacher.html
- <http://www.nisshinkyo.org>
- <http://www.jees.or.jp/jltct>
- <http://www.jees.or.jp/index.htm>
- <http://www.jpf.go.jp> (서울센터): <http://www.jpf.or.kr>
- <http://www.ctcfl.org/banfa.aspx>
- <http://www.hanban.edu.cn>
- http://www.hanban.edu.cn/teachers/node__9753.htm
- <http://www.fle.fr>
- <http://www.ciep.fr/carnetadFLE/formation/univer.php>
- <http://www.ciep.fr/enic-naricfr> (프랑스 학위 인정 관련 사이트)
- <http://www.goethe.de>
- <http://www.britishcouncil.org>
- <http://www.trinitycollege.co.uk>
- http://www.eslcafe.com/search/Teacher__Training
- <http://www.tefl.com>
- <http://www.teflcertificate.com>

<http://www.tesol.org>

<http://www.batqi.org>

<http://www.europa-pages.com/uk/TEFL-Info.html>

<http://www.cambridgeassessment.org.uk/ca>

참고 자료

1. 질문지(국가별로 동일한 질문을 드렸고, 필요시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추가 질의를 했음.)

[주요 국가 자국어 교사 자격 제도 운영 현황에 대한 조사]

- (1) 중국에는 외국어로서의 중국어 교사 자격 제도가 있는지요? 그래서 자격증이란 게 있는지요?
[한국은 국어기본법 및 동 시행령에 의해 1, 2, 3급의 자격증 제도가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부장관의 명의로 발급됩니다.]
- (2) 있다면, 법률로 정해진 것인지요? 그리고 국가가 인정하는지요?
[위 내용 참조]
- (3) 대학교나 대학원에서 외국어로서의 중국어 교육을 전공하거나 중국어 교육 또는 중국어학을 전공하면 무조건 자격증을 주는지, 전공을 하더라도 일정 성적이 되어야 주는지, 아니면 전공을 해도 시험을 통해 합격해야 자격증을 주는지요?
[한국의 경우, 위 법에 의해 대학/대학원에서 전공을 하면 2급 자격증을, 부전공을 하면 3급 자격증을 받습니다. 또한 성적과 관계없이 전공을 하고 졸업을 하면 모두 2, 3급을 받습니다.]
- (4)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전공을 안 하고도 일정 시간 연수 과정(예를 들면, 단기간의 양성 과정 등)을 통해 수업을 들으면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 국가가 시행하는 시험을 보고 합격하면 자격증을 받는 제도가 있는지요?
[한국어 전공을 하지 않은 경우는 일정 기간 동안 위 국어기본법 및 동 시행령이 요구하는 수업 시수(총 120시간 이상)를 이수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겨,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이라는 시험을 보고, 합격하면 3급을 받습니다. 이 시험은 학력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위제와 시험제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 (5) 위와 같이 한국의 경우와 달리 법이나 자격 제도가 없으면, 중국 내 대학 등지에서 외국인 유학생이나 일반인 대상의 교육은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어떤 규정이나 법이 있는지요?
- (6) 세계 각국의 중국문화원(또는 공자학당)에서 중국어를 가르치는 분들은 어떤 자격을 가진 분들인지요?
- (7) 중국 내에서나 외국에서 중국 정부나 정부 관련 기관 등에서 중국어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지요? 반드시 일정한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지요?

2. [일본어 교사 양성을 위한 표준적인 교육 내용(日本語教師養成のための標準的な教育内容)]

[1] 社會・文化・地域

1. 世界と日本: (1)諸外國・地域と日本 (2)日本の社會と文化
2. 異文化接觸:
 - (1)異文化適応・調整 (2)人口の移動(移民・難民政策を含む。)
 - (3)兒童生徒の文化間移動
3. 日本語教育の歴史と現状
 - (1)日本語教育史 (2)日本語教育と國語教育 (3)言語政策
 - (4)日本語の教育哲學 (5)日本語及び日本語教育に關する試験
 - (6)日本語教育事情: 世界の各地域、日本の各地域
4. 日本語教員の資質・能力

[2] 言語と社會

1. 言語と社會の關係
 - (1)社會文化能力 (2)言語接觸・言語管理 (3)言語政策
 - (4)各國の教育制度・教育事情 (5)社會言語學・言語社會學
2. 言語使用と社會
 - (1)言語變種 (2)待遇・敬意表現 (3)言語・非言語行動
 - (4)コミュニケーション學
3. 異文化コミュニケーションと社會
 - (1)言語・文化相對主義 (2)二言語併用主義(バイリンガリズム (政策))
 - (3)多文化・多言語主義 (4)アイデンティティ(自己確認、歸屬意識)

[3] 言語と心理

1. 言語理解の過程
 - (1)予測・推測能力 (2)談話理解 (3)記憶・視點
 - (4)心理言語學・認知言語學
2. 言語習得・發達
 - (1)習得過程(第一言語・第二言語) (2)中間言語 (3)二言語併用主義(バイリンガリズム) (4)ストラテジー(學習方略) (5)學習者タイプ

3. 異文化理解と心理

- (1) 社會的技能・技術(スキル) (2) 異文化受容・適応
- (3) 日本語教育・學習の情意的側面 (4) 日本語教育と障害者教育

[4] 言語と教育

1. 言語教育法・實技(實習)

- (1) 實踐的知識・能力 (2) コースデザイン(教育課程編成)、カリキュラム編成 (3) 教授法 (4) 評価法 (5) 教育實技(實習) (6) 自己点検・授業分析能力 (7) 誤用分析 (8) 教材分析・開発 (9) 教室・言語環境の設定 (10) 目的・對象別日本語教育法

2. 異文化間教育・コミュニケーション教育

- (1) 異文化間教育・多文化教育 (2) 國際・比較教育 (3) 國際理解教育
- (4) コミュニケーション教育 (5) 異文化受容訓練
- (6) 言語間對照 (7) 學習者の權利

3. 言語教育と情報

- (1) データ處理 (2) メディア / 情報技術活用能力(リテラシー)
- (3) 學習支援・促進者(ファシリテータ)の養成 (4) 教材開發・選擇
- (5) 知的所有權問題 (6) 教育工学

[5] 言語一般

1. 言語の構造一般

- (1) 言語の類型 (2) 世界の諸言語 (3) 一般言語學・日本語學・對照言語學
- (4) 理論言語學・応用言語學

2. 日本語の構造

- (1) 日本語の構造 (2) 音聲・音韻体系 (3) 形態・語彙体系 (4) 文法体系
- (5) 意味体系 (6) 語用論的規範 (7) 文字と表記 (8) 日本語史

3. コミュニケーション能力

- (1) 受容・理解能力 (2) 言語運用能力 (3) 社會文化能力 (4) 對人關係能力
- (5) 異文化調整能力